

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낙시어선어업자가 해당 낙시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승선자 명부에서 전자문서로 된 명부를 제외함(안 제33조제5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